

제1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6. 25.(화) 13:30~

의안 심사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사과·딸기산업특구 지정신청 의견청취의 건 2

〔 거창사과딸기산업특구 지정신청 의견청취의 건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6. 1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3. 6. 1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6. 2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거창사과·딸기는 거창군 농업소득의 32.9%, 10.34%를 각각 차지할 만큼 지역의 중요한 소득원이며, 사과·딸기 주산단지로서 우수한 재배 환경 및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거창사과테마파크, 경남사과이용연구소, 딸기체험농장 등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FTA발효 후 수입과일의 증가,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민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저하 등 농업에 새로운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 거창사과·딸기산업특구를 지정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적용 및 특화사업추진을 통하여 이러한 현실을 개선 발전하여 거창사과·딸기 명품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
- 이러한 취지로 특구지정 계획(안)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1) 특구의 명칭 : 거창 사과 · 딸기 산업 특구

(2) 특구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9번지의 외 8,014필지

(3) 특구의 면적 : 15,778,213m²(1,577.82 ha)

(4) 특구지정의 필요성

-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농업중심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통해 경상남도의 권역별 발전전략을 충실히 수행하여 경남 서북부 중심도시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지역발전의 선도역할을 수행
- 특구지정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복합산업화 추진이라는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함으로써 FTA를 적극 대응하여 지역농업을 보호하고 거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함

(5) 특화사업계획

- 고품질 생산체계구축 (고품질생산단지확충 등 7개 사업)
- 가공분야활성화 (사과생과일주스 연구. 생산지원 등 2개 사업)
- 유통기반구축 (산지유통센터운영 등 3개 사업)
- 명품브랜드 육성 (사과이용연구소운영 등 7개 사업)
- 명소 마케팅추진 (거창사과테마파크 운영 등 5개 사업)

(6) 특화사업자 : 거창군수

(7) 특구 토지이용계획 : 해당없음

(8)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22조)
 - 거창스포츠파크 및 사화마라톤대회코스 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찰서장에게 도로의 차량통행을 금지·제한 조치 요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23조)

- 특구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광고물의 설치기준, 종류, 모양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농지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26조)

- 사과, 딸기 재배시 농지의 임대 및 사용대를 할 수 있는 특례인정

○ 도로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33조)

- 특구지역내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점용을 일시적으로 허용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36조의 5)

- 거창 사과·딸기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우선 심사

○ 특허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36조의 8)

- 가공식품 등 사과와 관련된 특허신청에 대한 우선 심사

○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43조)

- 사과·딸기를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시 식품의 표시기준을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음

(9)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 51,841백만원

○ 조달방법 : 국비 4,709(9.08%), 도비 8,806(16.99%),
군비 28,846(55.64%), 민자 9,480(18.29%)

(10)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화 방안 : 해당 없음

(11)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 2013 ~ 2017년(5년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거창사과·딸기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은 지리적여건(큰 일교차, 물의 발원지 등)과 거점APC, 사과이용연구소, 사과테마파크, 딸기체험 마을 등 우수한 지역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발생, 농민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저하, FTA에 따른 수입과일의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나. 그 동안 축적된 기반시설과 생산기술 노하우 등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1-2-3차 산업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등 사과·딸기 부가가치 즉 브랜드 가치 향상 전략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거창사과·딸기 산업 특구를 지정하려는 것으로서

다. 이와 관련 공청회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렴하고,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 외에 타 특구와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채택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